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7.

발 의 자 : 박정현 · 이주희 · 이학영
복기왕 · 이연희 · 이광희
박균택 · 박홍배 · 문진석
박민규 · 이강일 · 염태영
김한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양로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음.

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

가 자신의 생활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2의 제목“(양로지원)”을“(양로 및 요양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